

기고

중국의 민사소송



**정재관
KEA특허지원센터장**

1. 서론

중국은 최근 지재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우이 중국 부총리가 중국의 지재권 단속현황을 상세히 소개한 것도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알아달라는 메시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과 함께 지재권 침해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상하이선언을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 내 불법복제의 뿌리는 쉽게 뿌리 뽑힐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중국 내 지재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 내 지재권 침해 대응 수단으로서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중국의 민사소송

1) 재판 제도

중국의 재판 제도는, 「헌법」이나 「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자유 변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기초 인민 법원」「중급 인민 법원」「고급 인민 법원」「최고 인민 법원」의 몇 개의 법원의 심리를 거친 안건은 원칙으로서 종결이 된다. 다만, 당사자가 최후심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한층 더 상급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재판 감독 수속」제도가 설치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 역할을 이루고 있다.

2) 관할권

(1) 심급 관할

법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반 인민 법원이 1심의 관할권을 가지지만 특허(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분쟁 사건에 관해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소재지의 중급 인민 법원, 또는 최고 인민 법원

이 미리 지정한 중급 인민 법원만이 1심의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청구액수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고급 인민 법원이 1심의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주된 특허분쟁 안건은, 북경 시중급 인민 법원을 시작으로 지재권에 정통한 재판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약 30개소의 지재 법정에서 심리가 되고 있다.

(2) 지역 관할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주소,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 간직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특히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제소가 이루어진 소송에 있어서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 땅 또는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중급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특히, 실용신안, 의장권 침해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의 「행위」, 특히 방법에 근거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의 사용, 판매, 수입 등의 행위도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의 실시지에 속하는 인민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고 인민 법원 사법 해석 5조).

인민 법원의 선택에 관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영향력이 큰 현지의 인민 법원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북경, 상하이 등의 심리 능력이 높고 물가수준이 높은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급 인민 법원이 1심이 되듯이, 제소시에는 본래 요구하고 싶은 액 이상의 고액(15억엔 이상)의 배상액을 청구하여, 실제 심리가 개시된 후에 있어 본래의 청구액수를 인하하는 전술이 취해지는 일이 있다.

3. 맷음말

특허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은 장기화되고 있는 소송기간, 상승하는 소송비용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있어서도 큰 리스크를 수반한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제도 하에 있는 중국에서는 다양한 지재 분쟁해결 수단의 이용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